의 안 번 호	586

-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관리국)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제3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2026년도)

202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관리국)

2026.04.21.

전문위원 송 세 창

1.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주체 이관** 등 내·외부적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집행 실적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에 2026년 4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립전 예산 편성 3건 (179,495천원)**

- **신속도시정비과**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시비 170,000천원)**
- **건축과**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시비 6,251천원)·해체 공사장 상시점검 지원(시비 3,244천원)**

나. **신규사업 편성 2건 (16,580천원)**

- **신속도시정비과** : **주거정비과 사무 이관**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 주택재개발 사업지원(5,220천원)** 및 **주택재개발사업 안전점검 지원(11,360천원)**

다. **경상경비 집행 잔여분 감액**

- **주거정비과(△12,848천원)** : 조직 개편 및 **사업 이관에 따른 집행 잔여 조정**

라. **시비보조금 교부 감소에 따른 감액**

- **공원녹지과(△20,552천원)** : 보조금 확정내시 조정에 따른 증·감액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17,612천원), 반려식물로 만나는 마음치유 (△3,296천원), 숲가꾸기사업(109천원), 도시텃밭·체험농장 운영(24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3. 세입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	비율(%)
계	3,656,229	3,495,990	160,239	4.58
일반회계	2,749,203	2,598,459	150,744	5.80
특별회계	907,026	897,531	9,495	1.06

□ 부서별 현황 (일반 ·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	비율(%)
계		3,656,229	3,495,990	160,239	4.58
일반·특별회계	주택정책과	1,689,629	1,689,629	-	-
	주거정비과	1,000	1,000	-	-
	신속도시정비과	170,000	0	170,000	순증
	도시계획과	0	0	-	-
	건축과	608,176	598,681	9,495	1.59
	공원녹지과	1,187,424	1,206,680	△19,256	△1.6

□ 세입 검토의견

※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 처리

○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34억9,599만원 대비 1억6,024만원(4.58%) 증액된 **36억5,6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신속도시정비과**

: 시·도비보조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성립전) **170,000천원(시비 100%)이 순증 편성**되었음.

- 대상지 : 성북구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 규 모 : 42,810㎡
- 사업내용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경사유 : 서울시 시비 보조금 교부(2026.1.15., 170,000천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

나.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성립전 사업비 **9,495천원(시비 100%)이 증액 편성**되었음.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성립전) 6,251천원
-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지원사업(성립전) 3,244천원

다. **공원녹지과**

: 보조금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19,25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수목식재사후관리 : 기정 202,612천원 → 확정내시 185,000천원으로 시비 감액(△17,612천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 시비보조금 확정 감액(△1,715천원)
- 숲가꾸기사업 : 국고 54천원·시비 17천원 소폭 증액

4. 세출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	비율(%)
계	21,551,245	21,388,570	162,675	0.76
일반회계	20,989,033	20,835,853	153,180	0.74
특별회계	562,212	552,717	9,495	1.72

□ **부서별 현황** (일반 ·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	비율(%)
계		21,551,245	21,388,570	162,675	0.76
일반·특별회계	주택정책과	2,378,510	2,378,510	-	-
	주거정비과	179,643	192,491	△12,848	△6.67
	신속도시정비과	966,982	780,402	186,580	23.91
	도시계획과	455,196	455,196	-	-
	건축과	804,387	794,892	9,495	1.19
	공원녹지과	16,766,527	16,787,079	△20,552	△0.12

☐ 부서별 세출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추경사유
주거정비과	재건축사업 지원(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6,400	△2,400	신속도시정비과와의 업무 조정에 따른 감액
	역세권사업 지원(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12,244	16,292	△4,048	대상지 감소·위원회 심사 수당 단가 조정·역세권사업 자진 취하에 따른 신문공고료 감액
	원활한 주택재개발 사업지원(감)	사무관리비	72,492	77,892	△5,400	재개발구역 업무의 신속도시정비과 이관에 따른 수당 감액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감리점검 및 사업지원(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2,500	△1,000	재개발구역 업무의 신속도시정비과 이관에 따른 점검 개소 감소
소 계			90,236	103,084	△12,848	
신속도시정비과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성립전)	시설비, 부대비	770,000	600,000	170,000	[성립전] 정릉동 정비계획수립용역 시비 교부(2026.1.15.)
	효율적 주택재개발 사업지원(신규,구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20	0	5,220	주거정비과 소관 재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행정 지원 신규 편성
	주택재개발사업 안전점검 지원 (신규,구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60	0	11,360	주거정비과에서 이관된 재개발구역 공사장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소 계			786,580	600,000	186,580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성립전)	사무관리비	6,251	0	6,251	[성립전] 시비 보조금 교부(2026.2.13.)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지원(성립전)	사무관리비	3,244	0	3,244	[성립전] 시비 보조금 교부(2026.2.13.)
소 계			9,495	0	9,495	
공원녹지과	숲가꾸기사업(증)	시설비, 부대비	7,052	6,943	109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 (국50:시15:구35)
	수목식재 사후관리(감)	인건비	773,822	791,434	△17,612	시비 확정내시 감액(202,612→185,000)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증)	사무관리비	10,247	10,000	247	시비 확정내시 증액
	반려식물로 만나는 마음치유(감)	행사운영비	22,164	25,460	△3,296	시비 확정내시 감액 (15,260→13,298)·매칭구비 조정
소 계			813,285	833,837	△20,552	
합 계			1,699,596	1,536,921	162,675	

*** 주택정책과·도시계획과는 변동 없음.**

□ 세출 검토의견

※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 처리

○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13억8,857만원 대비 **1억6,268만원(0.76%) 증액**된 **215억5,124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208억3,585만원 대비 **1억5,318만원(0.74%) 증액**된 **209억8,903만원**, **특별회계(건축안전)**는 5억5,272만원 대비 **950만원(1.72%) 증액**되어 **5억6,221만원**으로 편성됨.

○ 부서별 주요 변동 현황은 **신속도시정비과(1억8,658만원), 건축과(950만원), 공원녹지과(△2,055만원), 주거정비과(△1,285만원)** 순임.

가. **주거정비과 (△1,285만원)**

: 재개발 관련 업무가 신속도시정비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지원 운영비·업무추진비(△2,400천원), 역세권사업지원 운영비·위원회 수당·신문공고료(△4,048천원),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 수당(△5,400천원), 재개발사업 안전·감리점검 업무추진비(△1,000천원)가 각각 감액 편성됨. 업무 이관에 따른 적정한 조정으로 사료됨.

나. **신속도시정비과 (1억8,658만원)**

: [성립전] 정릉동 16-179번지 일대(42,810㎡)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1억7,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주거정비과에서 이관된 재개발구역 행정지원(5,220천원) 및 공사장 안전점검(11,360천원)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

- 정릉동 16-179번지 : 2025.12.16.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 2026.03. 용역 착수
- 업무이관 주택재개발 구역(7개소) : 동소문2, 성북2, 돈암6, 정릉골, 보문5, 삼선5, 동선2 (사업완료 43개 구역)

다. **건축과 (95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 서울시 보조금 교부(2026.2.13.)에 따른 성립전 안전점검 사업 2건이 반영된 것으로 민간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6,251천원) : 1만㎡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연중 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1].

- 해체공사장 상시점검(3,244천원) :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붕괴·화재 예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 **공원녹지과 (△2,055만원)**

: 수목식재사후관리 시비보조금이 기정 202,612천원에서 185,000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 차액 17,612천원을 감액하고, 반려식물보급사업 시비보조금도 기정 15,260천원에서 13,298천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매칭 구비 포함 3,296천원을 감추경함. 반면 숲가꾸기사업(109천원) 및 도시 텃밭(247천원)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소폭 증액됨.

5. 검토결과

○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성립전 보조금 반영, 조직 개편에 따른 재개발 관련 사무의 효율적 이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성립전 사업 편성, 그리고 공원·녹지 분야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특히, 신속도시정비과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성립전 예산 반영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구역 지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 내 성립전 안전점검 사업들 또한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는 민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주거정비과에서 신속도시정비과로의 사무 이관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정비사업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추경 성립 후 관련 사업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이에,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2조**[1]**와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한 내·외부적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 절차와 요건을 적정하게 준수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